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29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신성범·김종양·송언석

김용태 • 이종배 • 조은희

인요한 • 박정하 • 이성권

서일준 · 김상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두면서, 특히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인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빈집이 방치될 경우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붕괴, 화재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 및 철거가 필요함. 현재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유휴 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

에게 자진 정비 및 철거 이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빈집 관리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철거 등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하여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빈집 소유자에게 해당 빈집의 관리 책임및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하고자 함(안 제146조제3항제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3항제2호 중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을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가.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공부상 무허가 주택은 제외하되, 「지방세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빈집 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철거 등 조치 명령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개축・수리 등 조치 명령을 60일 이내에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빈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3 항의 개정규정 중 빈집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 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3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	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u>홍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u>	<u>해당하는</u>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	
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	
액으로 한다.	
<u><신 설></u>	가.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u>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u>
	<u>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u>
	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
	험 건축물
<u><신 설></u>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2호에
	│ 따른 빈집(「건축법」 제3

2의2. (생략) ④·⑤ (생략)

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공부상 무허가 주택은 제외하되, 「지방세법」 제106조제3 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 상이 되는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빈집의 소유자가 과세기준 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철거 등 조치 명령 또는 「농어촌정비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 른 철거·개축·수리 등 조치 명령을 60일 이내에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빈집

2의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